

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 목 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기획재정부령 제597호(2017.03.10)로 개정 공포된 「법인세법시행규칙」 일부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3. 임대차계약시 특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는 예외규정이오니 각 업체에서는 법인 고객 대여시 안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, 개정령 전문은 우리조합 웹사이트(www.scra.or.kr)자료실 법령 제·개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「법인세법시행규칙」 일부 개정 내용(발체) 1부. “끝”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



수신자 : 서울지역 230여개 자동차대여사업자

기획실
관리팀

담당 이예슬

과장 황지영

팀장 김진석

실장 성정현

시행 서자대조17-434 (2017.03.10) 접수 - ()

우 06704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34길 4(방배동, 프린스효령빌딩 2층) / www.scra.or.kr

전화 (02) 525-9076 전송 (02) 525-9063 / kjs@scra.or.kr / 비공개

[붙임]

「법인세법시행규칙」 일부 개정 내용(발췌)

1. 개정이유

- 일정한 임차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 체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차 승용차의 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임대차 특약 체결이 가능한 임차승용차의 범위(안 제27조의2 제3항 신설)
 -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의 임차계약기간 동안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직원만 임차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함.

3. 신·구 대비표

변 경 전	변 경 후
제27조의2(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) ① 영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"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.	제27조의2(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)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.
② 영 제50조의2제5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"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.	② _____ _____ _____ _____.

③ 영 제50조의2제10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1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: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,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. 다만,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(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. 2.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: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④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·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, 거래처·대리점 방문, 회의 참석, 판촉 활동, 출·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. ⑤ 내국법인이 해산(합병·분할 또는 분할 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)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	③ 영 제50조의2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<u>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</u>”란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<u>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(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)</u>를 말한다. ④ 영 제50조의2제1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1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: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,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. 다만,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(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. 2.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: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⑤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·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, 거래처·대리점 방문, 회의 참
--	--

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 등기일(합병·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 기일을 말한다)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.	석, 판촉 활동, 출·퇴근 등 직무와 관련 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 다. ⑥ 내국법인이 해산(합병·분할 또는 분할 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)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 등기일(합병·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 기일을 말한다)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.
---	--

[부 칙]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, 제4호 단서 및 제5호,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.

제6조(서식에 관한 적용례)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※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『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』는 조합 웹사이트 서식자료실(또는 법제처 웹사이트)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.